

정부의 도서관 발전정책에 바란다

- 법령의 보완 및 예산, 인력의 확보와 관련하여 -

이 은 철

(한국문헌정보학회장)

도서관의 발전을 위해서는 강력하고도 적절한 도서관 정책이 수립되고 집행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최근 정부는 각급 도서관을 지식기반사회에 걸맞는 도서관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을 수립, 발표하는 등 매우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문화관광부는 『도서관발전 종합계획』을,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학교도서관 활성화 종합방안』등을 입안하여 발표하였다. 또한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대학도서관의 발전을 위한 정책도 입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 모두가 주지하고 있듯이 최근 도서관 또는 독서에 대한 관심이 과거 어느 때보다 고조됨과 동시에 정부의 각종 도서관 정책이 수립되고 있음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며, 우리 사서들에게는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그러하지 못한 측면도 매우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정부는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 이미 확정되었거나, 입안 중인 도서관 발전방안들에 대한 우리 사서들의 생각과 우려를 정부에 제시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며, 정부는 이 제안들을 심도있게 논의하고 수용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정부가 발표한 도서관 정책에 대한 다양하고도 종합적인 관점에서의 접근과 검토가 요구되지만 지면 제한으로 '관계 법령의 보완', '인력 및 예산의 확보' 등에 한정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도서관및독서진흥법』과 도서관 관련법의 보완이 시급하다.

일반적으로 법령은 국가가 부여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서 법령에 반영되어 있는 정책은 적극적으로 실행에 옮겨지게 된다. 따라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뒷받침할만한 관련 법령을 제·개정하는 것은 국가가 반드시 수행하여야 할 의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도서관 정책의 수립과 관계 법령의 제·개정에 있어서도 예외일 수는 없다. 그러나 현재 정부의 도서관 발전방안에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관련법의 보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모든 법령은 목적을 지니고 있으며, 대부분의 법령들은 일반적으로 법 적용의 대상들에 대한 규제를 일차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도서관 관련법, 교육관련법 등은 국민에게 의무를 부여하거나 규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관련기관들을 육성하고 그 활동을 조장(助長)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법이다.

그러나 현행의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은 도서관의 설립과 육성을 조장하고, 국민과 도서관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는 법으로는 매우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공공도서관 설립의무」, 「공공도서관 육성 및 운영」, 「사립 공공도서관 지원」, 「도서관의 시설 및 자료기준」, 「사서직원 배치기준」, 「자료의 폐기 및 제적기준」, 「국립중앙도서관장 및 공공도서관장의 전문직

임명」 등에 관한 조항을 강화 또는 개정하여 명실공히 국가가 도서관을 어떻게,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발전시킬 것인가를 구체화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정보기술의 발전과 함께 급변하는 도서관 환경에 적합하도록 『저작권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현행의 이 법으로는 일반 국민들에게 디지털 도서관을 통한 도서관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이러한 법령의 보완 작업들은 점진적으로 시행하여도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즉시 착수하여야 할 매우 시급한 일이며, 모든 유형의 도서관에 공히 적용되어야 할 과제이다.

둘째, 예산 및 인력의 확보를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

최근 정부가 발표하고 있는 도서관 발전방안들을 보면서 우리 사서들은 상당히 고무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매우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측면도 있다. 우려에 대한 주요한 원인은 도서관발전 종합계획에 대한 예산의 규모 및 확보방안이 전혀 제시되지 않고 있다는 데 있다. 과거의 전철을 밟을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앞서기 때문이기도 하다. 우리는 과거에 정부가 수립하였던 도서관 발전계획들을 잘 알고 있으며, 그것들이 잘 시행되었던가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다.

우리들은 과거 어느 때보다 현 정부가 지식정보사회에서의 도서관의 중요성을 범 정부적인 차원에서 깊이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혹시 정부는 이 계획을 한 부처의 개별적인 사업으로 치부하여 협력 및 지원방안에 대해 방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특히 예산을 지원하는 기획예산처가 이 계획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여 예산지원에 대해 인색한 것은 아닌지? 우리들의 우려가 기우에 지나지 않기를 바란다.

정부의 도서관 정책에 대해 우리 사서들이 우려하고 있는 또 다른 원인은 도서관 발전의 주체가 되는 인력, 즉 사서교사와 사서의 확보 및 육성방안이 매우 미흡하다는데 있다. 특히 『학교도서관 활성화 종합방안(안)』에 제시된 “학교도서관 전담 관리인력 확보 방안”은 우리 사서들을 실망시키고 있다. 학교도서관의 운영을 겸임교사, 도서관 담당교사, 계약제 사서들에게 맡기겠다는 계획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학교도서관 사서교사 확보의 어려움에 대해 우리들도 잘 알고 있다. 특히 인력의 확보는 예산의 문제와 직결되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는 점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그러하더라도 상기의 확보방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학교도서관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은 물론 학교도서관에 대한 애정과 열정이 있는 사서교사들에게 교육의 일선 현장인 도서관을 맡겨야 한다.

주무 부처인 교육인적자원부가 사서교사의 확보와 관련하여 좀 더 확신을 가지고 강력한 대안을 마련하기를 바란다. 모든 학교도서관에, 아니 50%의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를 당장 임용해 주기를 바라지도 않는다. 단지 우리 사서들이 수긍할만한 좀 더 솔직하고, 현실성있는 장·단기적인 사서교사 확보방안이었으면 좋겠다. 현재 학교도서관에서 단지 사명감 하나로 일하고 있는 소위 일용직 사서들에게 계속적으로 희생을 강요할 수는 없지 않겠는가?

만약 기록물이 없었다면 인류의 지식들은 전승되지 않았을 것이고, 인류사회의 발전은 기대할 수 없었을 것은 자명한 일이다. 동시에 선현들이 생산해 낸 기록물을 수집, 정리, 보존 및 전승하는 도서관이라는 사회적 기관이 존재하지 않았더라면, 현재와 같은 인류사회의 발전은 기대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국가 및 사회의 발전과 문화창달은 도서관의 발전과 정비례한다’는 명제가 분명하다면, 현행의 도서관 발전방안이 대한민국의 발전과 문화창달에 충분히 적실한가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겠는가.